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10/1 통권 1747·1748호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747·1748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 및 응답**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총실 의무와 책임 변화
-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 인비용으로 인정됨
- 최고 경영자의 세무관리를 위한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 및 응답
- 원자재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제공한 용역의 실제 수형 장소가 국외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됨 (p.11)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상속재산 계산에 가산할 재산상향과 공제액〉

개념구분	상세내용, 합산 등
상속재산	사망자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금전환가물건 + 재산적 권리)
의제상속재산	보험금: 사망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실질적 보험료 납부계약
	신탁재산: 사망자가 신탁한 재산 + 신탁수익권 퇴직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 유족연금 제외
10년 내 증여재산	10년 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 10년 이내 상속인(자녀 등 증여액)
	5년 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 5년 이내 상속인외의 자(손자녀 + 제3자 등) 증여액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 처분·인출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 2년 이내 5억 이상(용도 불분명)
	채무부담이지만 용도불분명: 1년 이내 2억 이상 + 2년 이내 5억 이상
창업·기업승계	창업자금증여액(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50억원까지 - 5억원) × 세율 10%(10명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 → 상속시 가산
	기업승계증여액(조특법 제30조의6): 기업지분증여액(승계금액 - 10억원) × 세율 10% → 상속시 가산 (기업지분증여승계한도액: 10년 이상 경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300억)
공제액	기초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금융상속공제 20%(2억까지) = 통상 12억원 통칭

(안사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7·1748호 / 주간 40·41호

2025. 10. 1.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추석 연휴로 인하여 통권 1747·1748호가 통합 발간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상속재산 계산에 가산할 재산상황과 공제액	표지
CEO의 경영산책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 의무와 책임 변화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 고민할까?)	-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외화)로 거래가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문의 - 원천징수세 물의 - 과년도 미지급 퇴직금 일시 계상 - 지급보증 회계처리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양도가액평가방법 - 카드사별 지방세 결제 혜택	8 9
직장인 Survival	업무 자동화 습관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 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 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 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67, 2025.02.26)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 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 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규소득-14, 2025.02.26)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제공한 용역의 실제 수행장소가 국외인 경 우만 영세율 적용됨	12
세무정보	- 최고 경영자의 세무관리를 위한 주요 세법 개정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 및 응답 - 원자재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집 업 종 탈세자” 세무조사	14 24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23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 의무와 책임 변화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배경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사는 이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의무를 다하여 한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의 개정전후의 비교

-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1998.12.28. 신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2025.7.22 전문개정]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개정 전: 충실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이 “회사로만 한정되어 있었음.
 - 개정 후: 회사 및 주주를 명시적으로 충실의무의 직접 대상에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의 공평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변화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문화하여, 소수주주 포함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다.
-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 대우"를 위해 판단 행동해야 하며, 위반 시 주주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넓어졌으며,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 이사의 책임 범위의 변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사의 책임 범위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책임의 범위 확대
 - 과거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면 됐지만, 이제는 회사와 더불어 모든 주주(대주주, 소수주주, 내외국인 주주 등)의 이익 및 공평한 대우까지 고려해야 할 명시적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이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수주주 보호 강화 및 책임추궁 가능성 확대
 - 과거 논란이 많았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등에서 소수주주가 희생되는 관행에 대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즉, 주주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 의사결정 부담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주주 집단(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대주주, 소액주주 등)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위축되거나, 법적 분쟁 및 소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 신뢰도와 자본시장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 이익 침해 시 이사가 직접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주주 이익의 균형점 설정이 법적 경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외화)로 거래가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외화를 대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하여, 인보이스 거래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계산서(면세),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거래해야 하며, 주고받는 대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처럼 국내사업자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 문의

Q 아래 각 상황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문의드립니다

1. 일반 법인A(대부업 및 금융기관 아님)가 그룹B(개인/법인/사모펀드)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
2. A가 온투업자C의 개인신용대출 복수채권에 투자
3. 온투업자C → A에게 원리금 상환시 이자소득세 (15.4%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4. A일반 법인이 그룹B에게 대여금 상환
 -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 27.5%
 - 법인(대부업 아님): 27.5%
 -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27.5 % / 법인격이 아닐 경우 15.4%
5. 그룹B의 구성원이 연간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일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 개인 :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신고 대상
 - 법인: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
 -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법인세 신고 / 법인일 경우 투자자에게 귀속 (즉, 법인이 아닐 경우 3번 15.4% 로 원천징수 종결)

→ 위에 기재한 원천징수세율이 맞는지와, 이 외 추가로 세금납부 대상이 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위 1~4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상기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율은 타당합니다.
2. 각각의 거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년도 미지급 퇴직금 일시 계상

Q

당사는 전임직원이 DC로 가입되어 있으며,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2011년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개업 후 몇년간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최근 몇년간 불입액이 증가하였으나,

2024년말 미지급액이 상당함. 또한, 개업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2025년도에 과년도에 미계상한 미지급 퇴직금을 일시 계상할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A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에 납입하는 임원퇴직금 불입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시 계상금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보증 회계처리

Q

당사의 의류를 광고 목적으로 인플루언서에게 협찬 진행하고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 처리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 / 예금)

이때 협찬 제품 재고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맞을까요?

A

협찬물품도 마찬가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버스요금·택시요금·기차요금·항공료 등의 교통비와 출장지에서의 식대·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 이 비용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가 아닌 출장업무를 수행한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시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물론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어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불이익도 없애는 방법이다.

♣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해도 됨

출장비를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를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 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출장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46013-2370, 19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도 시외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역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 서일-1016, 2005.08.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양도가액평가방법

거래유형	평가방법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산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

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분	개인 소득세율(8단계)			법인 소득세율(4단계)		
	과표 구간	세율	누진 공제	과표 구간	세율	누진 공제
세율	1400만원 이하	6%	-	2억원 이하	9%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	3000억원 이하	21	4억2000만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	3000억원 초과	24	94억2000만
	3억원 이하	38	1994만			
	5억원 이하	40	2594만			
	10억원 이하	42	3594만			
	10억원 초과	45	6594만			



카드사별 지방세 결제 혜택

카드사	혜택	상세 내용
현대	부분 무이자 할부	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3개월차 할부수수료 고객 부담, 4-6개월차 수수료 면제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5개월 차 할부수수료 고객 부담, 6-10개월차 수수료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6개월 차 할부수수료 고객 부담, 7-12개월 차 수수료 면제
신한	슬림할부	6개월 슬림할부 시 1-3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4-6개월 차 무이자 10개월 슬림할부 시 1-4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5-10개월 차 무이자 12개월 슬림할부 시 1-5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6-12개월 차 무이자
	캐시백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결제 시 납부금액의 0.1% 캐시백
하나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4개월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5개월차 수수료 고객 부담, 6회차부터 면제
비씨	무이자 할부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4개월차 수수료 고객 부담, 5-10개월 차 무이자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시 1-5개월차 수수료 고객 부담, 6-12개월 차 무이자
KB 국민	부분 무이자 할부	6개월 슬림할부 시 1-3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4-6개월 차 무이자 10개월 슬림할부 시 1-5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6-10개월 차 무이자 12개월 슬림할부 시 1-5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 6-12개월 차 무이자
NH 농협	무이자 할부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할부	7-10개월 : 1-3회 차 수수료 고객 부담(잔여회차 수수료 면제)



채권형·주식형 ETF 세금

구분	채권형	주식형
매매차익	보유기간 과세 15.4%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4(15.4%) 과세	배당소득으로 14(15.4%) 과세



업무 자동화 습관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1. 반복되는 업무를 '리스트업' 하십시오

업무 자동화의 첫 단계는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반복하는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입력, 파일 정리 등을 기록해 두면 자동화의 후보가 명확해집니다.

2. 엑셀·스프레드시트의 자동 기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직장인의 많은 업무는 여전히 숫자와 표를 다루는 데서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은 함수, 반복되는 데이터 정리는 매크로, 복잡한 합계는 피벗테이블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고를 덜어주는 기능이 모이면 하루의 업무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 템플릿을 만들어 두십시오

보고서, 메일, 회의록 등 형식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문서는 매번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작성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4. 자동 알림과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프로젝트 관리 툴이나 캘린더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중요한 마감일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에 맡기고, 본인은 업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5. 작은 자동화를 꾸준히 확장하십시오

업무 자동화는 한 번에 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며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자동분류 → 보고서 양식 자동화 → 데이터 수집 자동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부담 없이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6. 팀 차원의 표준화로 연결하십시오

개인 차원에서 자동화 습관을 들였다면, 이를 팀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템플릿과 규칙을 만들면 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율이 줄고, 전체 팀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제공한 용역의 실제 수행 장소가 국외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됨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부가-449, 2024.08.30

질 의

- AA(이하 "신청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
-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
-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XX.XX. ~ 20XX.XX.XX.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 수산양식 인프라 구축 및 시설구축,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 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 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

질의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67, 2025.02.26

질 의

- (원천세 납부의무) 신청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서면법규법인-1649, 2024.08.19

■ 질 의

- 지배주주등에 해당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 그 추가 취득한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제1안)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제2안) 투자주식에 해당함

■ 회 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규소득-14, 2025.02.26

■ 질 의

- 질의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3년 만기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개인투자조합이 만기일에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후 질의인이 벤처기업에 미술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동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AI 관세행정, 정보화 조직 개편으로 '본격 가동'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초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청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관세청은 단순한 시스템 고도화를 넘어, 인공지능 전환(AI) 관점에서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AI 관세행정 구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편된 정보화 조직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을 조속히 완성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받는다...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정부는 오늘(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의 세무관리를 위한 주요 세법 개정내용

- 국세청, 2025. 9

* 2025 최고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책자 中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 인하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세율 및 과세표준		■ 법인세율 인하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적용시기) '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 설>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금액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인이 얻은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시기) '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3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마련(수익범위 명확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이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할인 금액을 수익에 포함 ○ (좌 동)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적용시기) '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마련(손비범위 명확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비의 범위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할인 금액을 손비에 포함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적용시기) '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철도시설관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30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 시 5년 균등상각)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적용시기) '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 합리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 사업자간 공동 경비 배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④ 중 선택, 미선택시 ⑤ 선택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④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 공동경비 분담 적용 손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①-② 중 선택, 미선택시 ① 선택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적용시기) '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법인 기준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적용 범위 합리화

증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제외 법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120조의25

(적용시기) '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미비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②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에 투상세 가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①+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좌 동)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22



8 연결법인 간 결손금 정산 예외 요건 완화

●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예외 요건 완화 ○ (좌 동) ○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한) 신고기한 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2

(적용시기) '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대상 확대

●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li style="padding-left: 20px;"><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적용시기) '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 -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제외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적용시기) '5.2.28.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중견기업) ○ 보험 및 연금업(중견기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업종 등 추가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p>*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배주주 등 지분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용시기) '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 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좌 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시기) '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4년까지): 초기 3년 간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50%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100%		
구분	기본 감면		추가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창업중소 기업	-	5년 50% (신성장 서비스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등	5년 50%	5년 100%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신 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시기) '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을 조정은 '26.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간 감면을 적용

증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¹⁾	구 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7.5 ²⁾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3	6, 9 ³⁾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국가전략기술	15	15, 20 ⁴⁾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시기) '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부터 적용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을 우대대상에 추가 ○ (좌 동)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

(적용시기) '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 국적선박 확충 유도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 <p>*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Sigma(\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톤당 1운항일 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 (좌 동)

<p>-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개별선박순톤수</th> <th>톤당 1운항일 이익</th> </tr> </thead> <tbody> <tr> <td>1,000톤 이하분</td> <td>14원</td> </tr> <tr> <td>1,000~10,000톤</td> <td>11원</td> </tr> <tr> <td>10,000~25,000톤</td> <td>7원</td> </tr> <tr> <td>25,000톤 초과분</td> <td>4원</td> </tr> </tbody> </table> <p>○ (제출서류) 요건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추 가></p>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p>-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개별선박순톤수</th> <th colspan="2">톤당 1운항일 이익</th> </tr> <tr> <th>기준선박</th> <th>기준선박 外</th> </tr> </thead> <tbody> <tr> <td>1,000톤 이하분</td> <td>14원</td> <td>18.2원</td> </tr> <tr> <td>1,000~10,000톤</td> <td>11원</td> <td>14.3원</td> </tr> <tr> <td>10,000~25,000톤</td> <td>7원</td> <td>9.1원</td> </tr> <tr> <td>25,000톤 초과분</td> <td>4원</td> <td>5.2원</td> </tr> </tbody> </table> <p>※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p> <p>○ (좌 등)</p> <p>-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 계획서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p>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적용시기) '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9일 (금)	9월 22일 (월)	9월 23일 (화)	9월 24일 (수)	9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384.60	1393.60	1394.00	1393.80	1394.90
일 본 엔 (JPY)	935.76	941.53	943.68	944.02	937.31
영 국 파 운 드 (GBP)	1876.41	1877.11	1883.99	1885.04	1876.21
캐 나 다 달 러 (CAD)	1003.66	1011.10	1008.46	1007.30	1003.78
홍 콩 달 러 (HKD)	178.03	179.25	179.41	179.26	179.32
위 안 화 (CNH)	194.71	195.98	195.79	195.92	195.93
유 로 화 (EUR)	1632.10	1635.95	1645.13	1646.57	1638.17
호 주 달 러 (AUD)	915.71	918.87	919.97	919.84	918.54
싱 가 폴 달 러 (SGD)	1080.28	1084.64	1087.41	1086.11	1082.5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9.98	331.26	331.71	331.98	331.3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 및 응답

- 국세청, 2025. 9 -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6.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28, 2012.8.17.)

5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을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6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7

2021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23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21년 6월, 감면기간 : 2021년 6월 ~ 2026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① 근로자 재직 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 ② 근로자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일반

10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11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12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14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6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도 연령계산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은 청년 취업자의 연령계산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17 2023.10.1.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2024.1.1.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은 언제인지?

- 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3.10.1.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18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21.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3.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24.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1.4월 ~ 2026.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19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2023.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4.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5년간(2024.2월 ~ 2029.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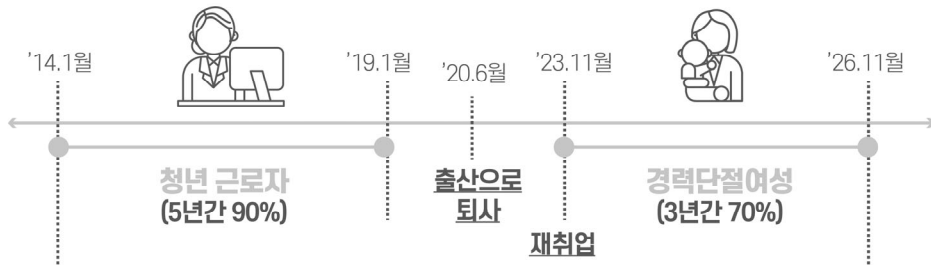
20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하나요?

-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 ~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1 2014~201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유형:청년) 적용 받은 후 2020년 6월에 출산으로 퇴사하여 2023년 11월에 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 예. 청년의 자격으로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출산을 사유로 퇴사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3년의 기간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6.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3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은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4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 '13.7.10. ~ '16.7.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귀 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 '16.8.1. ~ '17.12.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귀 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 '18.1.1. ~ '18.7.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연 150만 원 한도)

25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 1) 2014.1.1.~2019.2.11.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6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27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년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예.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조특령§27 ②2)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청년 등이
- 주식양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2021.8.20.)

2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29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8.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32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
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 2023.12.31. 정년 퇴직 후 동일회사에 2024.1.10. 촉탁으로 재입사한 경우
-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 되는 것이며,



- '2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2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은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등 관련서류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관련 예규 : 서면-2022-원천-4912(2023.4.10.)

33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34 청년(15세~34세 이하)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령계산시 그 기간만큼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한 기간은 연령계산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 대상 중소기업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 ③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③)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7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

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3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9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60세 이상 직원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0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41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취업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

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42 중소기업의 유예(2021년~2023년)를 적용받는 기업의 감면 만료일은 중소기업확인서의 2024.3.31.인지?, 2023.12.31.인지?

- 예. 중소기업 유예(2021년~2023년)를 적용받는 기업의 감면 기간 만료일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2020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만료일은 2023.12.31.입니다.

4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44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45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 유사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임

46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원천-1456, 2024.5.9.)
 -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 조특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48 본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점의 업종이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네,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49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되는 것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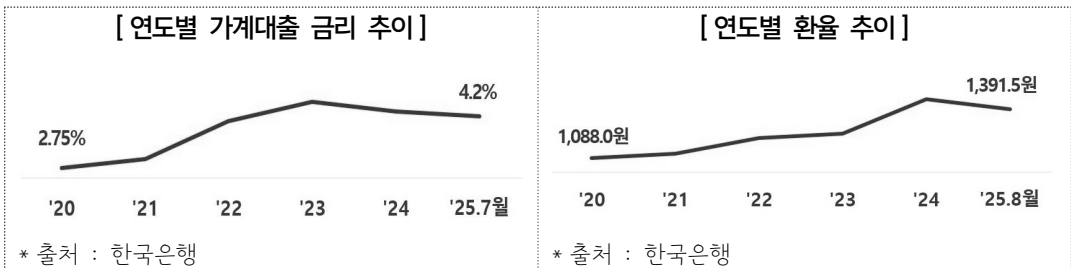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업종 해당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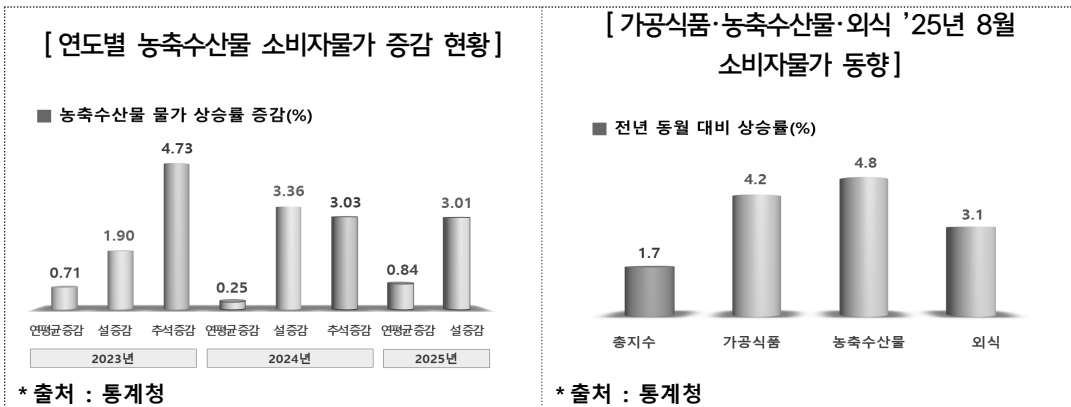
- 국세청, 2025. 9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최근 고금리,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재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①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②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③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④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총 55개 업체입니다.

/ 세무조사 대상 /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2개	12개	14개	17개

2 세부 추진내용

① [유형 1]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 첫 번째 조사대상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입니다.
 -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② [유형 2]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입니다.
-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유형 3]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세 번째 조사대상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 이들 또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④ [유형 4]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 마지막 조사대상은 거짓 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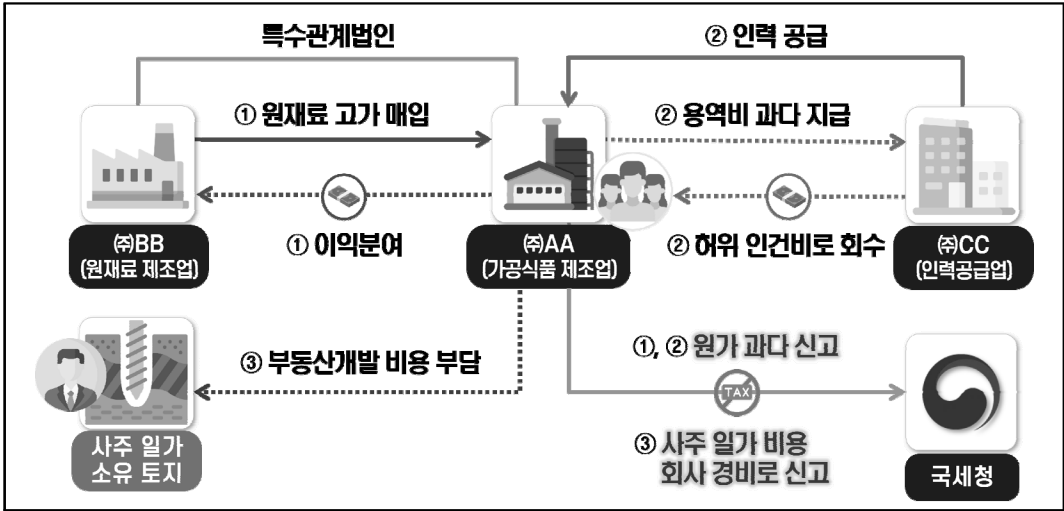


-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 게다가 이들은,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며,
 -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재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가공식품 제조·판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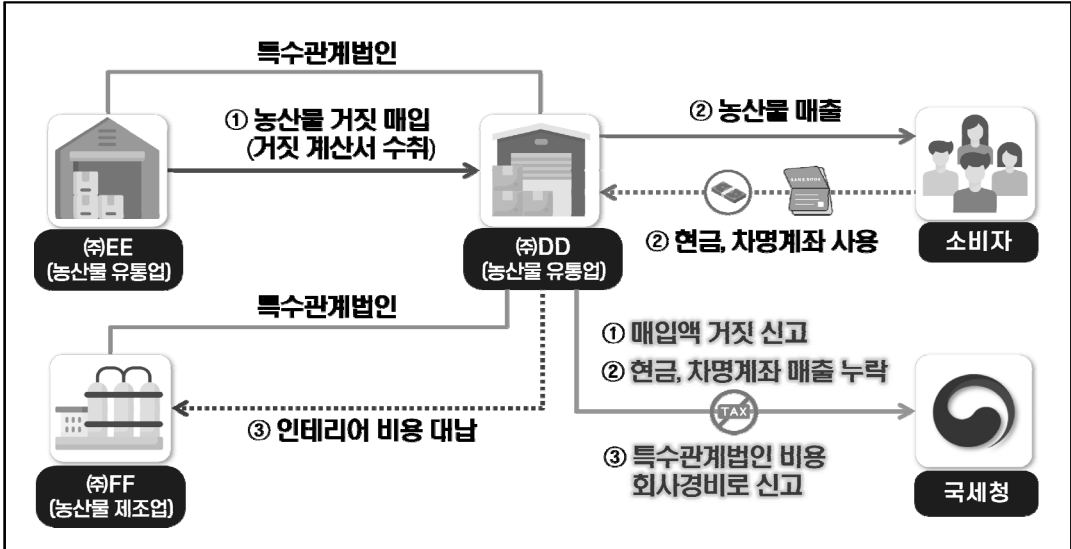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주)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〇% 인상
- ① (주)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주)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주)BB에는 이익을 분여
- ② (주)AA는 인력공급 업체 (주)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 (주)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주)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
- ③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주)AA가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원재료, 용역비 등 원가를 과다 신고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주 일가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주)AA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2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액 과다 신고, 현금·차명계좌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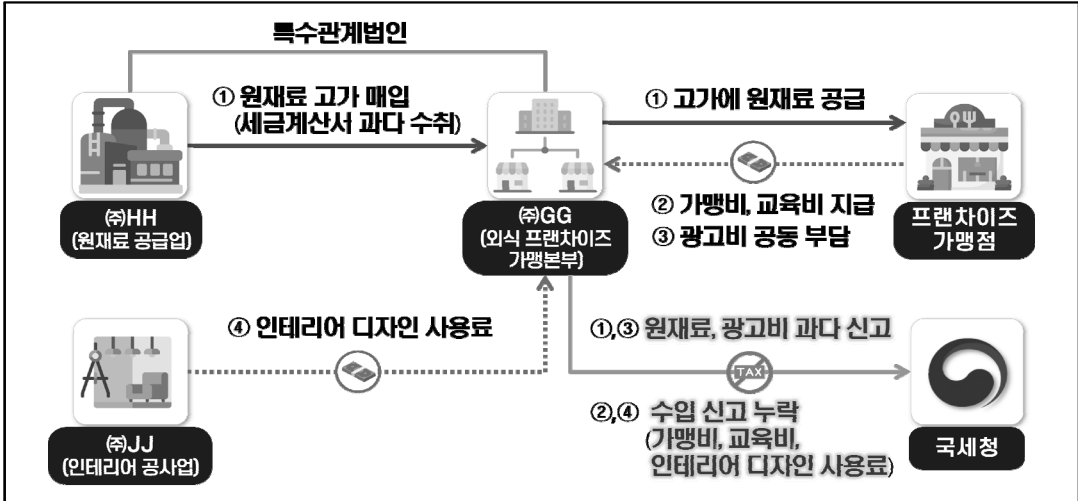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주)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 인상
- (주)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주)DD에 매출
- ① (주)DD는 농산물 매입 시, (주)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
- ② (주)DD는 농산물 매출 시,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 누락
- ③ (주)DD는 특수관계법인인 (주)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주)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주)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

사례 3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여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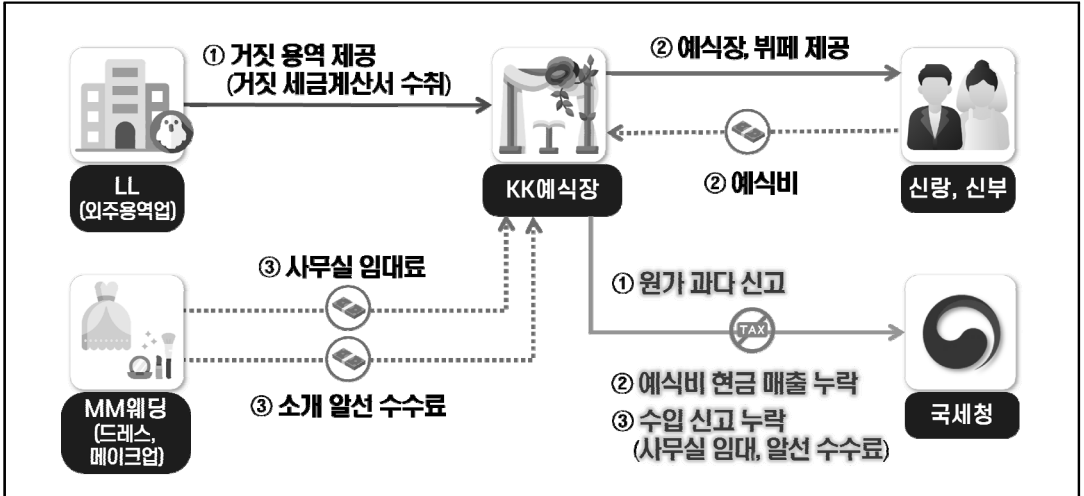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주)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〇〇% 인상
- ①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주)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
- ② (주)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 ③ (주)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주)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
 - ④ (주)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주)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주)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

□ 조사방향

- 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주)GG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

사례 4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
[예식]



□ 주요 탈루혐의

-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〇% 인상
- ①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
- ②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
- ③ MM웨딩은 드레스,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로,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있으나, KK예식장은 임대수입을 무신고
 - MM웨딩은 수입금액 중 50%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KK예식장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

□ 조사방향

-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KK예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